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0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고 I의 자 E

5. F

6. G

변 론 종 결 2022. 7. 15.

판 결 선 고 2022. 8. 26.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89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8 지분,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1 지분, 같은 목록 제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26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17, 18, 19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8. 5. 접수 제19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박미영, 판사 최민혜

1) 2020. 10.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36’,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10. 14. 접수 제26102호’,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8. 5. 접수 제00000호’는 각 오기로 보인다.

